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1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 1. 제정이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순찰신문고'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시간에 필요한 장소를 순찰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순찰신문고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안 제2조)
- 나. 구청(동장)과 경찰서의 협력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다. 탄력순찰 의견수렴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57   팩스 : 02)3396-9055
- E-mail : queen@junggu.seoul.kr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 이라 한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간, 장소에 대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통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 “순찰신문고“ 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활주변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시스템을 말한다.
3.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 이란 주민과 관할 경찰서, 중구청 등 행정기관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심리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주민과 통장회의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한다.
3.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주민과 관할 경찰서, 중구청 등의 상호신뢰와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바탕으로 누구나 관할 경찰서, 관할 경

찰서의 지역경찰관서, 순찰신문고 등에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전담부서 지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상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사항)** ① 정기 또는 수시로 통장회의를 주관하는 동장은 회의 개최 전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에게 회의일시와 장소를 문서나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이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회의에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홍보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편성하여야 하고,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동장 또는 주민은 치안 취약지역이나 범죄 불안장소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순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탄력순찰 지원)** 구청장은 통장회의를 통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의견수렴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우수사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